

의안
번호

355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06. 10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윤정자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355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05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1. 05. 28.

2. 제안이유

-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라. 감염병 표본감시, 역학조사, 필수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0조)
- 마.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·관리에 관한 사항
(안 제11조~제14조)
- 바. 강제처분·입원통지 및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- 사.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아.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20조)
- 자. 소독의무 및 방역소독 실시권고(안 제21조~제22조)
- 차. 예방위원 및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~제24조)
- 카. 방역관, 역학조사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27조)
- 타. 교육 및 홍보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~제29조)
- 파. 정보제공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~제3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05. 28. ~ 2020. 06. 04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감염병예방법”이라 함)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1)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바목의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조2)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3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행계획 수립과 역학조사, 소독의무 사항, 예방접종, 자원봉사 활동 사항,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서 감염병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, 차별금지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「감염병예방법」에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고,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,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시의적절하다 사료됨.

관 계 법 령

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 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 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 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 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 7. 감염병병원체 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 8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 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
 11.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
 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 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 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 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정
 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

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7조 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“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
3의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